

입주기업 운영 규칙

제정	2018. 1. 5.	(원장승인)
일부개정	2019. 6. 18.	(원장승인)
일부개정	2019. 12. 31.	(원장승인)
일부개정	2020. 8. 25.	(원장승인)
일부개정	2020. 12. 23.	(원장승인)
일부개정	2022. 4. 14.	(원장승인)
일부개정	2023. 3. 30.	(원장승인)
일부개정	2024. 2. 28.	(원장승인)
일부개정	2025. 5. 2.	(원장승인)
일부개정	2025. 12. 11.	(원장승인)
일부개정	2026. 2. 23.	(원장승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운영하고 있는 전북기업지원센터(이하 “기업지원센터”라 한다)와 전북글로벌게임센터(이하 “게임센터”라 한다) 입주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3., 2024. 2. 28. 2025. 5. 2.>

제2조(적용범위) ① 입주기업 운영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4. 2025. 5. 2.>

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21-26(3, 4, 5층)에 소재하고 있는 전북기업지원센터 시설물에 적용한다. <신설 2025. 5. 2.>
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8, 9층)에 소재하고 있는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시설물에 적용한다. <신설 2025. 5. 2.>

② 진흥원 입주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이란 진흥원 원장을 지칭한다.
2. “입주기업”이란 진흥원과 계약을 맺고 진흥원 소속 건물에 입주하는

자(기업)를 말한다. <개정 2025. 5. 2.>

3. “입주실”이란 입주자가 임대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4. “입주부담금”이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입주보증금, 관리비, 전기요금을 말한다.
5. “시설”이란 진흥원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진흥원 소유의 모든 시설을 통칭한다.
6. “퇴거”란 입주기간의 만료 및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진흥원과 입주자가 체결한 입주계약이 만료되는 것과 중대한 계약의 위반, 사업전망 불투명 등으로 인하여 계약만료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7. “강제퇴거”란 사업계획서와 다른 사업을 행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계약해지 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 8. 25.>
8. “졸업”이란 최대 입주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입주기업이 독립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3. 30.>
9. “입주부담금”이란 센터의 입주공간 임대로 발생한 관리비를 말한다. <신설 2023. 3. 30.>
10. “정보시스템”이란 서버·PC 등 단말기,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장치,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신설 2020. 8. 25.>
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며 정보시스템 일체를 포함한다.

제2장 조직 운영 및 심의위원회

제4조(조직 및 운영인력) 진흥원은 입주기업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두며 소속직원의 임면은 진흥원의 직제와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5조(입주기업 자치회) 진흥원 입주기업의 자율적인 운영과 입주기업 간 효율적인 의견 조정을 위하여 진흥원은 입주기업 자치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① 진흥원은 입주기업 선정, 입주기간 연장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내·외부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신청 경쟁이 없을 경우나 5년 이내 입주기간 연장 등은 3인 이상 위원으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2025. 5. 2.>

②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심의대상과의 이해관계가 성립 된 심의위원은 해당심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3., 2025. 5. 2.>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심사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2025. 5. 2.>

제3장 입주

제7조(입주모집) ① 입주모집은 정기모집과 수시모집으로 나뉜다.

② 정기모집은 국내 일간지 또는 통신망에 모집공고를 게시하여 모집할 수 있으며 수시모집은 입주실 현황에 따라 연중 모집할 수 있다.

제8조(입주대상) ① 진흥원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통신(IT) 관련분야
2. 게임,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문화산업(CT) 관련분야
3. 지역의 정보/통신/문화산업 육성 및 공공의 목적을 갖고 설립된 IT·CT 관련 협회, 단체 등

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도 불구하고 진흥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장이 입주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입주신청) ① 진흥원은 시설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입주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서 정한 서류 이외에 능력과 기술의 확인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승인) ① 진흥원이 입주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입주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2022. 4. 14., 2025. 5. 2.>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또는 서면심사 결과, 입주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입주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5. 5. 2.>

③ 제1항의 입주심사 평가기준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5.>

④ 입주대상기업은 입주심의위원별 평가결과 평균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2. 4. 14.>

제11조(예비입주기업 선정) 진흥원은 입주예정기업의 입주계약 체결 지연 및 포기, 기입주기업의 퇴거 등으로 인한 공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순위를 부여하여 그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입주기간 및 연장) ① 진흥원이 운영하는 입주기업의 입주기간은 최초 1년으로 하며, 2년씩 2회에 걸쳐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2. 4. 14., 2023. 3. 30. 2025. 5.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주기간 및 연장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4., 2023. 3. 30. 2025. 5. 2.>

1. 기업지원센터는 심사일 기준 총 입주기업실 수의 20% 이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대 2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

2. 게임센터는 최대 5년까지 입주한 기업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입주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이 입주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입주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진흥원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④ 제1항에 따른 입주 연장 신청 시 별표 2, 제2항에 따른 입주 연장 신청 시 별표 3의 입주연장 심사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 5. 2.>

제13조(입주계약체결 및 입주) ①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4.>

②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입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입주 연기 신청은 입주 연기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입주 연기 신청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4.>

④ 진흥원은 제3항에 의한 입주 연기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입주승인취소) ① 입주승인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3조에서 정한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3. 입주 전 입주보증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4. 입주계약체결 후라도 입주시설의 활용이 현저히 적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 총괄 책임자는 입주기업에 대해 미활용 사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활용을 독려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5. 제4호의 미활용 사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고의성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제퇴거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6. 기타 입주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0. 8. 25.>

② 입주 승인된 신청자가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 입주 포기 시점부터 1년간 입주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3. 3. 30.>

제15조(입주부담금) ① 입주부담금은 입주보증금, 관리비, 전기요금을 의미하며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② 입주기업은 입주보증금을 입주 전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은 매월 말일까지 관리비를 진흥원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③ 입주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3. 30.> <개정 2025. 12. 11.>

1. 시설·장비의 수선유지비
2. 시설·장비의 구매 등 자산취득비
3.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위탁관리비
4. 전기·수도·냉난방기 등 공공요금
5. 그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16조(관리비 및 각종부담금의 연체) ① 입주기업이 관리비 및 각종부담금을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금액의 2%에 연체월수를 곱한 금액을 적용한 연체료를 포함하여 원금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0. 00.>

② 진흥원은 입주자가 각종 부담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납부 독촉장을 1회 이상 발송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8., 2020. 8. 25.>

③ 진흥원은 입주자가 각종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납부 독촉장을 1회 이상 발송하고, 임대보증금으로 체납금 상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제17조(규칙준수) ① 입주기업은 입주기간 중 관련 법률 및 진흥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반드시 준수 및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진흥원은 시정·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5.>

② 제1항의 시정·경고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진흥원은 본문 제21조제4항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③ 진흥원은 본문 제5장(시설운영)을 포함하여 분기(4분기)별로 다음 각 호를 점검키 위해 입주기업 현장점검(모니터링)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경고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1. 입주시설 활용여부
2. 사업계획 수행현황 확인(최초 입주 시 제출한 사업계획 이행 여부)
3. 입주기업 애로사항 점검
4. 고용현황(지역인재 및 청년고용 현황 포함)

제18조(변경통보의 의무) ① 입주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동발생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4.>

1. 대표자
2. 상호
3. 창업 및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4. 사업자 등록사항의 변경

② 제1항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입주기업은 진흥원이 경고조치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변경신고 이행 후 입주기업의 변경사항이 부적절함이 판단되는 경우 진흥원이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연간보고) 입주기업의 연간 사업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입주기업은 진흥원에 연간 사업 실적 보고서를 진흥원이 지정하는 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졸업 및 퇴거

제20조(졸업) ①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시킬 수 있다.

1. 콘텐츠 개발과 상용화 성공 등으로 입주자가 독립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경우

2. 제12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의거하여 최대 입주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졸업 대상 기업은 졸업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졸업신청서와 졸업 후 추진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졸업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졸업기업의 관련 자료는 졸업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2. 진흥원은 졸업기업의 사후관리를 2년간 실시하며, 졸업기업은 진흥원에 연간 사업실적보고서를 진흥원이 지정하는 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졸업기업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입주시설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3. 30.]

제21조(퇴거) ① 입주기업이 자진하여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기업은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퇴거희망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퇴거신청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입주보증금 반환요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거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미납된 입주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보증금에서 정산 후 환급 처리한다. <개정 2022. 4. 14.>

② 퇴거 시 입주기업은 입주실을 입주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후 진흥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진흥원의 확인 절차 없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보증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③ 퇴거예정일 15일 후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진흥원은 입주기업의 동의 없이 입주실을 원상복구 시킬 수 있으며 이에 입주기업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기업이 부담한다.

④ 진흥원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동일 및 유사내용으로 3회 이상 누적 시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기업을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8. 25.>

1.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입주기업이 각종 부담금을 연간 누적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9. 6. 18.>
3. 흡연, 소음, 악취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진흥원 및 다른 입주기업의 사업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개정 2020. 8. 25.>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5. 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허위사실을 통해 사업 활동을 하거나 진흥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신설 2020. 8. 25.>
 7. 현장점검 실시결과 7일 이상 입주실 공석인 경우 <신설 2020. 8. 25.>
 8. 음주, 음식물의 조리 등을 하는 경우 <신설 2020. 8. 25.>
 9. 성과평가 또는 관리기관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신설 2020. 8. 25.>
 10. 퇴거기업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시설에 입주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3. 3. 30.>
- ⑤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진흥원은 입주기업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15일 전까지 퇴거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강제퇴거 대상 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 ⑥ 기타 원장이 심각한 규칙 위반 및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판단되는 사항등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 ⑦ 본 제21조에 인한 강제퇴거 조치에 대하여 입주기업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퇴거의 경우 입주부담금의 미납분은 퇴거일자까지의 입주부담금으로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25.>

제5장 시설운영

제22조(시설의 이용) 입주기업은 진흥원 시설관리에 공동 참여의식을 가지고 진흥원 건물 내 공용 및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공시설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공용시설물 사용) ① 이용자가 시설 내의 공용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다만, 입주자가 공용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면제되며,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같음할 수 있다.

제24조(손해배상) ① 입주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진흥원의 시설이나 설비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입주기업은 이를 지체 없이 진흥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의 산정은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시가에 의거 결정한다.

제25조(건물내 시설 조작·변경·신설 등) ① 입주기업은 진흥원 건물 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건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진흥원이 지휘 및 감독 등을 행할 수 있다.

1. 임대차 물건 내의 조작, 칸막이, 창호 등의 신설 또는 모양 변경행위
2. 기설공급외의 전등 전원의 신설 및 이전, 전화 기타 통신시설 가설, 급배수 등 설비의 신설, 증설, 이전 변경행위
3. 임대차 물건의 외부(출입문, 외벽, 유리셔터 등 포함)에 상호, 상표, 기타의 표지 부착행위
4. 금고의 고착 기타 주요 중량물의 반입, 고착 등의 행위
5. 간판 및 광고물의 시설 및 부착행위

② 제1항의 시설의 조작, 신설, 증설, 이전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과되는 비용,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은 입주기업이 부담한다.

③ 제1항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시설물 설치 및 구조변경을 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및 원상복구 요구를 할 수 있다.

제26조(청소 및 위생) ① 진흥원의 청결 및 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시설에 대한 정기적 청소를 제외한 입주 목적물 및 입주기업 소유물에 대한 청소는 입주기업이 실시한다.

② 입주기업은 실내 및 복도와 공동시설의 청결 및 공중위생을 지켜야 하며,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입주기업의 책임하에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진흥원은 제21조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제27조(물품의 반입 및 반출) ① 입주기업은 시설 내외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화물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진흥원 내로 반입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는 특별한 용기 등 위험방지 시설을 갖추고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공작기계 등 중량물이나 대형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품명, 수량, 규격, 중량 등을 사전에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진흥원은 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방재관리) 입주기업은 시설 방재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진흥원 내에서는 어떠한 소각행위를 하지 못한다.
2. 입주기업은 방재시설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입주기업은 방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주차) 입주기업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으나 차량의 도난, 훼손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은 입주기업 자신이 진다.

제30조(출입권한) 시설의 시건, 보전상태의 검사, 위생, 방화, 방범, 구호 등을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또는 본 입주기간 만료 전 다른 입주희망자에게 그 장소를 보여주기 위하여 진흥원 및 입주희망자는 입주시설 내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은 진흥원 및 입주희망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제6장 기타

제31조(인터넷 이용 보안관리) ① 진흥원의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 및 제공을 위하여 입주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P2P·웹하드·파일공유 등 업무에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Active-X 등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과 비인가 프로그램·장치의 설치 금지
2. 음란·도박·증권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근 금지
3.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금지
4. 불법 프로그램의 설치 및 불법 자료 내려 받기·설치 금지

② 다만,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이 한시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허가승인 기간에 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③ 입주기업은 불법 자료 및 프로그램의 설치·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입주기업에 있다.

④ 입주기업은 워·바이러스, 해킹프로그램, 스파이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신 프로그램 설치등과 같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은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정보보안 사고조사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제4항을 준수하지 않아 진흥원의 정보통신망 장애 및 정보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21조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25.]

제32조(신의·성실의 원칙) 진흥원과 입주기업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한 지원 및 성실한 기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3조(기타)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 법규 및 지침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개정 2024. 2. 28.>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18.)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31.)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8. 25.)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23.)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14.)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30.)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입주기업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제31조제6항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부 칙 (2025. 5. 2.)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2. 11.)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 4. 14., 개정 2023. 3. 30.>

입주 심사표																																																									
기업명		대표자		구분	성 명		서 명																																																		
입주호실		입주인력 (대표포함)		평가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점수																																																
정량 평가 (20)	기 업 신 인 도	○ 입주신청일 기준 창업일 3년 이내 4년 ↔ 5년 6년 ↔ 7년 7년 초과 10점 8점 6점 4점						10																																																	
	인 력 구 성	○ 입주예정인원 대비 입주신청한 면적의 타당성 2명 이상 1명 이상 기준인원 1명 이하 2명 이하 5점 4점 3점 2점 1점						5																																																	
	신 용 상 태 평 가 등 급	<table><tr><th colspan="4">평가요소</th></tr><tr><th>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th><th>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th><th>기업신용평가등급</th><th>배점</th></tr><tr><td>AAA</td><td>-</td><td>AAA</td><td rowspan="3">5</td></tr><tr><td>AA+, AA0, AA-</td><td>A1</td><td>AA+, AA0, AA-</td></tr><tr><td>A+</td><td>A2+</td><td>A+</td></tr><tr><td>A0</td><td>A20</td><td>A0</td><td rowspan="3">4</td></tr><tr><td>A-</td><td>A2-</td><td>A-</td></tr><tr><td>BBB+</td><td>A3+</td><td>BBB+</td></tr><tr><td>BBB0</td><td>A30</td><td>BBB0</td><td rowspan="3">3</td></tr><tr><td>BBB-</td><td>A3-</td><td>BBB-</td></tr><tr><td>BB+, BB0</td><td>B+</td><td>BB+, BB0</td></tr><tr><td>BB-</td><td>B0</td><td>BB-</td><td rowspan="2">1</td></tr><tr><td>B+, B0, B-</td><td>B-</td><td>B+, B0, B-</td></tr><tr><td>CCC+ 이하</td><td>C 이하</td><td>CCC+ 이하</td></tr></table>						평가요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AAA	5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4	A-	A2-	A-	BBB+	A3+	BBB+	BBB0	A30	BBB0	3	BBB-	A3-	BBB-	BB+, BB0	B+	BB+, BB0	BB-	B0	BB-	1	B+, B0, B-	B-	B+, B0, B-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5	
	평가요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AAA	5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4																																																					
	A-	A2-	A-																																																						
BBB+	A3+	BBB+																																																							
BBB0	A30	BBB0	3																																																						
BBB-	A3-	BBB-																																																							
BB+, BB0	B+	BB+, BB0																																																							
BB-	B0	BB-	1																																																						
B+, B0, B-	B-	B+, B0, B-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정성 평가 (80)	기 업 역 량	○ 해당 분야의 전문성 ○ 사업추진 의지, 책임감, 발전 가능성 A B C D 20~18 17~15 15~13 12~0						20																																																	
	사 업 기 획 력	○ 사업목적 및 방향의 적합성 ○ 콘텐츠의 차별성과 경쟁력 A B C D 20~18 17~15 15~13 12~0						20																																																	
	수 행 능 력	○ 참여인력 확보 및 참여율, 경력구성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창업 이후 매출 성과, 콘텐츠 사후 사업화 및 상용화 등 발전 가능성 A B C D 20~18 17~15 15~13 12~0						20																																																	
	기 대 성 과	○ 향후 신규고용 창출 효과 및 지역 기여도 ○ 기업 콘텐츠의 투자유치 가능성 및 경제적 성과 A B C D 20~18 17~15 15~13 12~0						20																																																	
	※ 예비창업자는 정량평가(20점) 만점 처리																																																								
	평가결과							100																																																	
	심사 평가 종합 의견																																																								

[별표 2] <개정 2022. 4. 14., 2023. 3. 30., 2026. 2. 23.>

입주연장 심사표

기업명	대표자	구분	성명	서명
입주호실	입주인력 (대표포함)	평가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점수						
정량 평가 (40)	고 용 창 출	◦ 전년도 대비 평가년도 고용인원 증가				10							
		2명 이상		1명				0명					
		10점		8점				6점					
	매 출 실 적	◦ 전년도 대비 평가년도 매출 증가여부 - 평가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 x 100				10							
		140%이상		120%이상				100%이상		80%이상		80%미만	
		10점		8점				6점		4점		2점	
	미 납 여 부	◦ 입주 중 관리비 미납 여부(최근 1년)				10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10점		7점				5점		3점		1점	
	신 용 상 태 평 가 등 급	평가요소				1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AAA				10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8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BB+, BB0		B+		BB+, BB0				6					
BB-		B0		BB-									
B+, B0, B-		B-		B+, B0, B-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							
정성 평가 (60)	사 업 성 과	◦ 사업실적서 상의 개발실적, 홍보실적, 납품계약실적, 지적재산권, 벤처기업, 산학연 개발현황 등의 기타실적				10							
		A		B				C		D			
		10~9		8~7				6~5		4~0			
	기 술 력	◦ 기술적 노하우 보유 및 참여 인력 기술수준의 우수성 ◦ 제품/콘텐츠의 사업화의 독창성 및 기술/서비스의 사업성				10							
		A		B				C		D			
		10~9		8~7				6~5		4~0			
	기 업 역 량	◦ 실효성을 가진 적정 사업계획 수립 및 실현 능력의 우수성 ◦ 시장전망 분석에 따른 제품/콘텐츠 경쟁력 확보의 우수성				10							
A		B		C				D					
10~9		8~7		6~5				4~0					
관 리 기 술	◦ 기업의 인력배치 및 운영계획의 적합성				10								
	A		B				C		D				
	10~9		8~7				6~5		4~0				
기 대 호 과	◦ 입주 연장을 통한 사업화, 상용화 등 성장 가능성				20								
	A		B				C		D				
	20~18		17~15				15~13		12~10				
평가결과						100							
심사 평가 종합 의견													

입주연장 심사표

기업명		대표자		구분	성명	서명
입주호실		근무자수		평가자		
총입주기간	0000.0.0. ~ 0000.0.0.(0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점수																																														
정량 평가 (40)	매 출 실 적	◦ 계속기업 평균 매출 증가율(최초 입주연도 대비 매출 증가율) ※ 연평균증가율 = $\frac{(\text{직전년도 매출액})^{\frac{1}{\text{연수}}}}{(\text{최초입주연도 매출액})} - 1$ <table><tr><td>30%이상</td><td>20%이상</td><td>10%이상</td><td>0%이상</td><td>이하</td></tr><tr><td>10점</td><td>8점</td><td>6점</td><td>4점</td><td>2점</td></tr></table>	30%이상	20%이상	10%이상	0%이상	이하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30%이상	20%이상	10%이상	0%이상	이하																																													
	10점	8점	6점	4점	2점																																													
	고 용 창 출	◦ 전년도 대비 평가년도 매출 증가여부 - 최초 입주연도 대비 고용인원=현재 근무자수-최초 입주연도 근무자수 ※ 고용인원은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기준으로 함 <table><tr><td>5명 이상</td><td>4명</td><td>3명</td><td>2명</td><td>1명</td><td>0명 이하</td></tr><tr><td>10점</td><td>9점</td><td>8점</td><td>7점</td><td>6점</td><td>5점</td></tr></table>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0명 이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10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0명 이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미 납 여 부	◦ 입주 중 관리비 미납 여부(최근 1년) <table><tr><td>없음</td><td>1회</td><td>2회</td><td>3회</td><td>4회 이상</td></tr><tr><td>10점</td><td>7점</td><td>5점</td><td>3점</td><td>1점</td></tr></table>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10점	7점	5점	3점	1점	10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10점	7점	5점	3점	1점																																														
신 용 상 태 평 가 등 급	<table><tr><th colspan="4">평가요소</th></tr><tr><th>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th><th>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th><th>기업신용평가등급</th><th>배점</th></tr><tr><td>AAA</td><td>-</td><td>AAA</td><td rowspan="4">10</td></tr><tr><td>AA+, AA0, AA-</td><td>A1</td><td>AA+, AA0, AA-</td></tr><tr><td>A+</td><td>A2+</td><td>A+</td></tr><tr><td>A0</td><td>A20</td><td>A0</td></tr><tr><td>A-</td><td>A2-</td><td>A-</td><td rowspan="4">8</td></tr><tr><td>BBB+</td><td>A3+</td><td>BBB+</td></tr><tr><td>BBB0</td><td>A30</td><td>BBB0</td></tr><tr><td>BBB-</td><td>A3-</td><td>BBB-</td></tr><tr><td>BB+, BB0</td><td>B+</td><td>BB+, BB0</td><td rowspan="4">6</td></tr><tr><td>BB-</td><td>B0</td><td>BB-</td></tr><tr><td>B+, B0, B-</td><td>B-</td><td>B+, B0, B-</td></tr><tr><td>CCC+ 이하</td><td>C 이하</td><td>CCC+ 이하</td></tr></table>	평가요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AAA	10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8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BB+, BB0	B+	BB+, BB0	6	BB-	B0	BB-	B+, B0, B-	B-	B+, B0, B-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0	
평가요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AAA	10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8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BB+, BB0	B+	BB+, BB0	6																																															
BB-	B0	BB-																																																
B+, B0, B-	B-	B+, B0, B-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정성 평가 (60)	경 영 능 력	◦ 기업 핵심역량과 기술사업화 역량 - 대표자의 사업관련 전문성 및 핵심기술 확보 여부 - 사업추진 대비 전문인력 현황 등 <table><tr><td>A</td><td>B</td><td>C</td><td>D</td></tr><tr><td>10~9</td><td>8~7</td><td>6~5</td><td>4~0</td></tr></table>	A	B	C	D	10~9	8~7	6~5	4~0	10																																							
	A	B	C	D																																														
	10~9	8~7	6~5	4~0																																														
	과제·행사 참 여 도	◦ 진흥원 제작지원 및 수행사업, 입주기업 간담회 등 참여도 ◦ 입주연장 이후 참여 계획 등 <table><tr><td>A</td><td>B</td><td>C</td><td>D</td></tr><tr><td>10~9</td><td>8~7</td><td>6~5</td><td>4~0</td></tr></table>	A	B	C	D	10~9	8~7	6~5	4~0	10																																							
	A	B	C	D																																														
10~9	8~7	6~5	4~0																																															
기 술 성	◦ 보유기술의 우수성 및 차별성 - 시장전망 분석에 따른 제품/콘텐츠 기술력의 우수성 및 차별성 <table><tr><td>A</td><td>B</td><td>C</td><td>D</td></tr><tr><td>10~9</td><td>8~7</td><td>6~5</td><td>4~0</td></tr></table>	A	B	C	D	10~9	8~7	6~5	4~0	10																																								
A	B	C	D																																															
10~9	8~7	6~5	4~0																																															
사 업 성	◦ 기술력 기반 사업의 성과확산 및 경쟁력 강화 <table><tr><td>A</td><td>B</td><td>C</td><td>D</td></tr><tr><td>10~9</td><td>8~7</td><td>6~5</td><td>4~0</td></tr></table>	A	B	C	D	10~9	8~7	6~5	4~0	10																																								
A	B	C	D																																															
10~9	8~7	6~5	4~0																																															
기 대 효 과	◦ 입주 연장을 통한 사업화, 상용화 등 성장 가능성 <table><tr><td>A</td><td>B</td><td>C</td><td>D</td></tr><tr><td>20~18</td><td>17~15</td><td>15~13</td><td>12~10</td></tr></table>	A	B	C	D	20~18	17~15	15~13	12~10	20																																								
A	B	C	D																																															
20~18	17~15	15~13	12~10																																															
평가결과			100																																															
평가의견																																																		

[별표 4]

입주부담금 산정

☐ 입주보증금

구분	내용	비고
실 전체	입주면적 1㎡ 당 24,000원	관리비 6개월 분

☐ 관리비

구분	내용	비고
실 전체	입주면적 1㎡ 당 4,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입주신청서

신 청 주 체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예비창업차 ☐			
기 업 명				설 립 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전 화	- -
법인등록번호		- -		팩 스	- -
주 소				홈 페이지	
입주희망면적		m ²	호	입주희망일	
대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Mobile			E - mail	
인 력 구 성		직 원 수 ()명 / 입주희망 인원 ()명			
		인 력 구 성 경영관리()명, 연구/개발()명, 기획/제작()명, 영업/마케팅()명, 기타()명			
재 무 구 조 (직전년도 기준)		영 업 이 익 원		매 출 액	원
		당기순이익 원		자본금	원
3 개 년 매 출 실 적		0000년		0000년	0000년
		원		원	원
대표 수혜사업					
0 0 0 0 년 추 진 목 표		매출액	원	주요 성과	
사 업 계 획 요 약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센터명」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_____(인 또는 서명)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제안서 제출 : 신청서 및 사업 수행계획서 등 첨부서류 구비하여 원본, USB 제출					

입 주 신 청 서

기 업 명

대 표 자

(인)

0000. 0. 0.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기업 일반현황 및 연혁, 주요성과

기업명		대표자	
사업분야/업종 (중복체크 가능)	☐ 캐릭터 ☐ 게임 ☐ IoT ☐ AI ☐ 방송영상 ☐ 플랫폼 ☐ VR/AR/MR ☐ 교육 ☐ 만화 ☐ 애니메이션 ☐ 게임 ☐ 음악 ☐ 패션 ☐ 기타()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설립년도	년 월		

주요 연혁 및 성과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 주의 사항>

- ※ 본 사업계획서는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십시오.
- ※ 각 문항별 주요 사항을 고려하여 기술하되, **입주기업 선정기준을 참조하여 프로젝트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 사업계획서는 제출 후 수정이 불가하며, 입주 선정평가 시 활용 됩니다.
- ※ 주요사업 실적 등과 관련된 **발표자료는 별도로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 ※ 작성 시, 파란색 예시를 삭제한 후 맑은고딕, 10포인트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 소개

2. 추진 사업

3. 사업화 전략/계획

4. 자금조달 계획

5. 일자리 창출 계획

- 현재 인원(대표자 포함) : _____명(정규직_____명, 계약직 _____명)
- 센터 상주 예정 인원(입주 기준/ 대표자 포함) : _____명
- 당해연도 추가 고용 예정 인원 : _____명 (정규직_____명, 계약직_____명)

6. 입주공간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7. 기타 소개 자료

8. 입주 시 지원받고 싶은 사항

조 직 도

☞ 기업 조직도 자율 양식으로 기재(제출일 기준)

상주인력 현황

번호	성명	직위	담당업무	근무경력	정부사업 참여율	연락처

- ☞ 제출일 기준, 입주 공간 내 입주희망인원 전체에 대하여 기재(채용 예정인력 포함)
- ☞ 기재한 모든 인원에 대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작성 필수

대표자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		전공	근무경력		00년	
	대학원		전공	자격증			

경 력			
사업명 (프로젝트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비고

기업 주요 계약사항

1. 기업 주요 약정서, 계약서, 협약서 요약

2.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현황

3. 기업이 제공받거나 제공한 지급보증/담보 현황

4. 기업의 보유 저작권, IP, 기술인증, 특허권 등 보유현황

신용정보 제공·활용·조회 동의서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본 기업은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입주신청서」 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기업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법인(주민)등록번호 :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 개인 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 본인은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입주신청서」를 제출하며,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에 따라 귀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입주 선정 평가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 신용조회회사 :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2.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목적 :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입주선정 평가

3. 조회할 신용정보 :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기록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 당좌) 예금 등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입주완료시까지 상기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의 신청서가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5.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입주 연장 신청서

신청기업	기업명		입주호실	
	대표자명		전화번호	
	e-mail		휴대폰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설립일	0000. 00. 00.(~0년)
	입주기간	0000. 0. 0. ~ 0000. 0. 0.(0년 0개월 / 연장 0회)		

신청내용	
연장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간)
연장사유	

상기와 같이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입주연장을 신청합니다.

- ※ 첨부 1. 사업계획서(자유양식)
2. 사업실적서(증빙자료 포함)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사업 실적서

기업명 :

☐ 재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장신청년기준 직전전년도	연장신청년기준 직전년도	연장 신청년도 실적 및 예상	
			현재	예상
자산총액				
자본금				
부채				
총매출액				
주제품매출액				
당기순이익				
R&D 투자				

☐ 개발 실적

개발 과제명	개발내용	개발기간	사업예산(백만원)			비고
			국비	도비	기타	
		년 월 일~ 년 월 일				

☐ 홍보 실적(증빙자료 첨부)

☐
납품계약실적(증빙자료 첨부)

프로젝트명 (계약제품)	수행기간 (계약기간)	진행도	계약자	계약금액	비고
	년 월 일~ 년 월 일				

☐
지적재산권 · 벤처기업 · 산학연 개발 현황

구분		등록명	등록일자	비고
지적재산권 등록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기타1			
	기타2			
벤처기업 인증				
산학연 연계 기술·제품 개발				

☐
과제 및 행사 등 참여실적 : 0회

☐
 과제 및 행사 등 참여실적 : 0회

프로젝트명(행 사 명)	참여기간(참여일정)	비고
	0000. 0. 0. ~ 0000. 0. 0.	

☐
 향후계획
 -

☐
향후 기대성과

매출, 신규 고용, 사업 수행 등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입주 계약서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임대인” 라 한다)와 입주기업 ____ (이하 “입주기업” 이라 한다) 쌍방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임대인과 입주기업 간에 입주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입주 목적물) 임대인은 입주기업에게 아래의 목적물의 사용을 허용하고 입주기업은 이의 사용에 관한 제반비용을 납부하기로 한다.

입주 목적물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39-4		
건 물 명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임대호수	층 호
임대면적	㎡		

제3조(입주계약기간) ① 입주계약기간은 ____ 년 ____ 월 ____ 일부터 ____ 년 ____ 월 ____ 일까지로 하되 입주가 취소되거나 퇴거하는 해당 일까지로 한다.

② 입주기업은 입주계약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계약기간의 연장, 축소 등 기간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기간종료 및 희망일자 30일 전까지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부담금) ① 입주부담금은 입주보증금, 관리비, 전기요금로 하며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구 분	금 액	납 부 일	비고
입주보증금	금 원()	입 주 전	
관리비	금 원()	매월 28일 이내	

② 개별전기요금은 개별 납부하며, 공용전기요금은 매월 입주면적에 따라 배분하여 별도 부과한다.

③ 관리비의 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④ 관리비의 최초 부과기준 일자는 계약개시일이며, 입주계약기간이 월 도중

에 게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을 한다. 다만, 실제 퇴거 일이 계약해지일보다 늦을 경우 실제 퇴거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연체료 및 부담금의 인상) ① 입주기업이 제4조의 관리비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료는 최종납기일 익일부터 입금일까지 월단위로 하고 다음 산식을 계산하여 원금과 연체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text{연체료} = (\text{미납 관리비}) \times 2\% \times \text{연체 월수}$$

② 입주기업이 위 1항 소정의 제반 금전채무를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않고 지체할 경우 이의 청구를 목적으로 임대인이 건물 내의 공공시설 기타 제반 설비의 이용을 제한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임대인은 입주계약기간 중 매 1년마다 주변의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사례, 물가상승률, 공과금의 증감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1개월 전 사전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상의 보증금, 관리비 등 기타 입주기업이 본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제반 비용을 인상 할 수 있다.

제6조(입주기업 금지사항) 입주기업은 본 건물 내·외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기타 공용시설물의 방해가 될만한 간판 광고의 설치, 게시 또는 방치하는 행위
2. 위험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3. 법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 제조 및 판매행위
4. 목탄, 석유, 유류, 가스 등 일체의 연료를 사용하여 체열하는 행위
5. 통념적 관상어 이외의 동물을 사용하는 행위
6. 임대인이 설치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오손하는 행위
7. 주류를 판매하거나 마시는 행위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유흥 행위
8. 쓰레기 투기 및 방치 행위
9. 사회 통념상 불법 서버(음란물, 사행성 게임 등을 제공하는 서버)를 운영하는 행위
10.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행위
11. 기타 임대인이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는 제반 행위

제7조(입주 건물내 시설의 조작·변경·신설 등) ① 입주기업은 입주 건물 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건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지휘 및 감독 등을 행할 수 있다.

1. 임대차 물건 내의 조작, 칸막이, 창호 등의 신설 또는 모양 변경행위
 2. 기설공급외의 전등 전원의 신설 및 이전, 전화 기타 통신시설 가설, 급·배수 등 설비의 신설, 증설, 이전 변경행위
 3. 임대차물건의 외부(출입문, 외벽, 유리셔터 등 포함)에 상호, 상표, 기타의 표지 부착행위
 4. 금고의 고착 기타 주요 중량물의 반입, 고착 등의 행위
 5. 간판 및 광고물의 시설 및 부착행위
- ② 제1항의 시설의 조작, 신설, 증설, 이전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과되는 비용,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은 입주기업이 부담한다.

제8조(손해배상) ① 입주기업 및 그 사용자 또는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 목적물과 본 건물 내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입주기업이 이를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의 산정은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시가에 의거 결정 한다.

제9조(출입권한) 건물의 시건, 보전상태의 검사, 위생, 방화, 방범, 구호 등을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또는 본 입주계약기간 만료 전 다른 입주희망자에게 그 장소를 보여주기 위하여 임대인 및 입주희망자는 입주 목적물 내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은 임대인 및 입주희망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입주기업에 대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①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서 제6조 금지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시
2. 입주기업이 본 계약에 따른 관리비 및 기타 본 계약상 부담하는 제반 금전채무의 이행을 납부기일로 부터 3개월 이상 연체 할 때
3. 임대인이 지정하거나 임대인과 합의한 입주 목적물의 용도(업종, 품목) 이외의 목적으로 입주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임대인의 승인 없이 건물 형상을 변경하였을 때

4. 공유시설 또는 공유대지를 부당하게 점유 또는 사용하였을 때
 5. 입주기업 또는 그 사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 목적물과 본 건물 내 시설을 훼손하거나 기타행위로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6. 입주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질권 또는 기타 담보의 목적이 되거나 양도 또는 가압류, 압류된 때
 7. 입주기업의 과실로 건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물건을 명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거 계약 해지 시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주기업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인 및 입주기업 변경에 대한 조치) ① 제2조의 입주 목적물에 대한 명칭, 관리비, 운영권자의 변경이 있을 때라도 이 계약의 효력은 존속하며, 입주 목적물의 소유권 변동이 있을 때 임대인은 신 소유자가 본 임대계약을 그대로 승계 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진다.

② 입주기업의 주소, 상호, 대표자, 운영목적, 기타 상업등기사항 또는 신분상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명도 및 원상복구) ① 본 입주계약기간이 종료한 때 또는 본 입주계약이 해제, 취소, 해지된 때에는 입주기업은 지체 없이 입주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 하여야한다.

② 입주기업은 입주 목적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이를 철거, 원상회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입주기업이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원상복구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입주기업의 동의 없이 입주실을 원상복구 시킬 수 있으며 이에 입주기업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기업이 부담한다.

제13조 (관리규칙) 임대인 또는 관리인이 이 계약에 의거 임대인의 재산보전과 입주 목적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규칙 및 세칙을 제정, 시행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운영규칙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된다.

제14조 (관할법원) 본 입주계약에 관한 분쟁은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5조 (해석) 본 입주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 등은 임대차관련 법률 등에 따른다.

제16조 (효력발생) ① 본 입주계약의 효력은 임대인과 입주기업이 모두 서명날
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② 본 입주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입주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이
에 기명날인하고 임대인과 입주기업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39-4

사업자등록번호 : 698-82-00142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인)

“입주기업”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39-4, _____호

사업자등록번호 :

기업명 : _____

대표자 : _____(인)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입주 연기 신청서

신청기업	기업명		입주호실	
	대표자명		전화번호	
	e-mail		휴대폰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신청내용			
입주확정일자	년 월 일	입주예정일자	년 월 일
연기사유			

상기와 같이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입주일자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입주기업 변경 신고서

신청기업	기업명		호실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휴대폰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총입주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변경내용	
변경전내용	
변경후내용	
변경사유	

상기와 같은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입주기업의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퇴거 신청서

신청기업	기업명		입주호실	
	대표자명		전화번호	
	e-mail		휴대폰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총 입주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요청내용	
퇴거예정일	년 월 일
퇴거 사유	

상기와 같이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입주보증금 반환요청서

신청기업	기업명		입주호실	
	대표자명		전화번호	
	e-mail		휴대폰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입주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요청내용			
실제퇴거일	년 월 일		
입주보증금	금 원()		
예금주		반환은행	
반환계좌			

상기와 같이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입주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 첨부 : 입주보증금 반환 통장 사본 1부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시설물 사용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기업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실무자연락처)	담당성명			
		담당주소			
		담당전화		E-mail	
신청내역	행사명				
	대관일시	 : ~ :			
	세부내용				
신청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음향시설 등)				

위와 같이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시설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4. 14., 2024. 2. 28.>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시설물 사용대장

[illegible]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졸업 신청서

신청기업	기업명		입주호실	
	대표자명		전화번호	
	e-mail		휴대폰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총입주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요청내용	
졸업예정일	년 월 일
졸업사유	

상기와 같이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입주기업 졸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